

학교시설건축 시행서
축조승인신청서 및 승인서

승인번호 --

* 제2면 및 제3면의 안내문과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안은 표기하지 아니합니다.

건축주	①성명	서명(인)	②주민등록번호			
	③주소	(전화)				
설계자	④성명	서명(인)	⑤면허번호	제	호	
	⑥사무소명		⑦등록번호	제	호	
	⑧주소	(전화)				
대지조건요	⑨위치	<input type="text"/> - <input type="text"/> - <input type="text"/> - <input type="text"/>				
	⑩지역	<input type="text"/>	⑪지구	<input type="text"/>		
	⑫지목	<input type="text"/>	⑬면적(m ²)			
요용도	⑭주용도	<input type="text"/>	⑮부속용도			
규모	○건축면적	m ²	○연면적	m ²	○지하면적	m ²
	○건폐율	%	○용적율	%	○건축물최고높이	m
	○층수	지상()층, 지하()층				
○구조			○공사종류	<input type="checkbox"/>		
○착공예정일			○준공검사에정일	년 월 일		
○오수정화시설		○주차장	옥내	자주식 기계식	대 대	m ² m ²
○건축물의 형태			옥외	자주식 기계식	대 대	m ² m ²
○기술사의 확인대상인 경우	구조기술자 성명 서명(인) (전화) 설비기술자 성명 서명(인) (전화)					
○일괄처리내용	공공시설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 ()					
	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허가,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()					
	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,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국가사업의 협의 ()					

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구
비
서
류

1.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지적도,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
2. 토지이용계획확인원
3.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의 구분란 1 및 3의 도서

승인 제 호

이 승인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학교시설의 건축·축조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규정에 적합하므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의 건축·축조를 승인합니다.

년 월 일

(교육감·교육장) 인

※ 건축승인 신청안내

제출하는 곳		처리부서	
수 수 료		처리기간	
근 거 법 규	○다음의 학교시설의 건축물을 건축·축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(학교시설촉진법 제5조2 및 동법시행령 제8조)		

신청학교시설의 동별개요

()매중 매

○주 용 도		○주 요 구 조	
○층 수	지하()/지상()층		
○구 분	계	층	층
○바닥면적(m ²)			
○용 도			
구 분	층	층	층
바닥면적(m ²)			
용 도			
구 분	층	층	층
바닥면적(m ²)			
용 도			
○직통계단수	개	○승용승강기대수	대
		○비상용승강기대수	대

※ 작성요령(신청건축물의 동별개요는 동마다 따로 작성하십시오)

①.④.○란 및 신청인란에는 성명을 기재하고, 도장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.

⑭ 및 ⑮의 “용도”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구체적으로 명시하되, “부속용도”라 함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그 면적이 주된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의 50%미만으로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합니다.

1. 건축물의 설비, 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
2. 사무, 작업, 집회, 물품저장, 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
3. 구내식당, 구내탁아소, 구내운동시설등 종업원 후생복지시설 및 구내소각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
4.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의무화하고 있는 시설의 용도

○ “건축면적”은 건축물의 외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투영면적으로 하되, 지상 1미터이하의 건축물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며 처마, 차양, 부연등이 1미터이상 돌출된 경우에는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으로 합니다.

○ “연면적”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.

○ “건폐율”은 건축면적÷대지면적×100(%)로 산정합니다.

○ “용적율”은 연면적(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부속주차면적은 제외)÷대지면적×100(%)로 산정합니다.

○ “구조”는 목조, 조적조, 철근콘크리트, 철골조, 철골철근콘크리트 기타로 기재하되,벽체와 지붕의 구조가 다른 경우에는 구분하여 기재합니다.